

「평창군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 선양 및 활용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11. 10.
- 회부일자 : 2025. 11. 18.
- 상정일자 : 2025. 11. 25.

2. 제안이유

- 우리군의 역사적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계승·발전시키고, 이를 선양·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지역의 문화 진흥과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기본 목적 명시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~ 제4조)
- 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업 제시(안 제5조)
-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민·관 협력 조항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국가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를 보존·관리·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진흥과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군수의 책무)에서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조(사업)에서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역사적·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6조(사업비의 지원)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에서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 자산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·의궤의 보존·관리와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며 나아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**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□ **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**국가유산기본법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·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